

의안번호	2200643
의 퇴 인	신성범 의원
회 답 일	2024. 7. 4.
추 계 번 호	24F0923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연장 －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에 따라 취득세는 2025년 37.4억원, 2027년 30.4억원 등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년간 총 101.5억원(연평균 33.8억원)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취득세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5	2026	2027	누적	연평균
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(안 제16조제1항)	-37.4	-33.7	-30.4	-101.5	-33.8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6조제1항 (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)	○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- 적용기간 연장: (현행) 2024년 12월 31일 → (개정안) 2027년 12월 31일	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6조제1항 (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2024년 국회에서 심의·의결되어 2025년부터 시행된다는 전제하에 세수효과는 2025년에서 2027년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 - 향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한 해에 취득세를 신고·납부하여, 이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취득 당해연도에 전액 발생한다고 가정
 - － 취득세는 취득일 후 60일 이내에 신고·납부하도록 규정(「지방세법」 제20조)
- 향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최근 5년(2018~2022년)간 취득세 감소추세를 반영하여 연평균 감소율(9.9%)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(1)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

- (제도개요)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감면(280만원 한도)
 - 주택개량 대상자: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연면적 150㎡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
 - －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과 합산하여 150㎡ 이하로 한정
 - 적용기간: (현행) 2024년 12월 31일 → (개정안) 2027년 12월 31일

- (감면실적) 최근 5년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액은 2018년 77.9억원에서 2022년 51.3억원으로 감소추세(연평균 감소율 9.9%)에 있음

[표 2] 최근 5년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 감면실적

(단위: 억원, %)

구분	2018	2019	2020	2021	2022	연평균 증감율
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따른 취득 주택의 취득세 감면액	77.9	76.3	68.0	58.7	51.3	-9.9%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.

(2) 추계방법 및 결과

-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에 따라 취득세는 2025년 37.4억원, 2027년 30.4억원 등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년간 총 101.5억원(연평균 33.8억원)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- 최근 5년(2018~2022년)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의 감소추세를 반영하여 연평균 감소율(9.9%)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
[표 3]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감면액 추계

(단위: 억원)

구분	2025	2026	2027	누적	연평균
취득세 감면액	37.4	33.7	30.4	101.5	33.8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의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최천규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천규	02-6788-4838	choi1009@assembly.go.kr